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단509909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김인년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우천출
변 론 종 결 2023. 5. 4.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1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9. 7. 15. 접수 제45355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모든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은 부직포 및 펠트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C 및 D은행 등 사이에 체결되는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의 취득, 관리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이다.

나. C은 2018. 11. 27. D은행 및 피고와, 금전채권신탁거래기본약관 및 그에 대한 특약(이하 ‘이 사건 신탁특약’이라 하고, 위 금전채권신탁거래기본약관 및 이 사건 특약을 아울러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E증권과 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금전채권신탁과 사모사채인수의 방법으로 피고가 C에게 대출을 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서, 위 대출의 구조는 C이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신탁원본으로 하여 D은행에게 신탁하고(C은 위탁자 겸 제2종 수익자, D은행은 수탁자, 피고는 제1종 수익자의 지위를 가진다), 피고가 50억 원의 사모사채를 발행하면 E증권이 위 사채를 인수하고, 이와 같이 조달한 50억 원의 자금을 피고가 C에게 제1종 수익권 취득에 대한 대가로 지급함으로써 C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며(즉 사실상 C이 자신의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대출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수탁자인 D은행이 C으로부터 신탁받은 물품대금채권의 회수금으로 피고가 E증권에 발행한 위 사모사채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즉 C이 신탁한 물품대금채권의 회수금으로 피고의 C에 대한 사실상의 위 대출금의 변제를 받는 것과 같은 구조이다).

다. C은 2018. 11. 27.경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신탁특약 별지 2 ‘계산기간별 제1종 수익권 권면액

지급액 등'과 같이 2019. 6. 27.부터 2019. 11. 27.까지 매월 833,333,333원, 합계 5,000,000,000원을, 신탁한 거래처 매출채권의 변제를 통하여 상환하는 것을 약정하고 위에서 본 신탁계약 내용과 같이 피고로부터 5,000,000,000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 신탁특약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조(용어의 정의)

34. “조기지급사유”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유를 말한다.

가. 위탁자가 신탁약관과 특약(이 사건 특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을 지급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신탁기간)

(1) 본건 신탁의 기간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회차	지급일	제1종 수익권의 내용		계산기간별 지급금액	비고
		제11조 제2항 제2호 (제1종 수익권 권면회 으로서, 사모사채 원금)	제11조 제2항 제1호 (사모사채 이자)		
1	2018-11-27	-	[]	-	사모사채 발행일
2	2018-12-27	-	-	-	
3	2019-01-27	-	-	-	
4	2019-02-27	-	[]	-	
5	2019-03-27	-	-	-	
6	2019-04-27	-	-	-	
7	2019-05-27	-	[]	-	
8	2019-06-27	-	-	833,333,333	
9	2019-07-27	-	-	833,333,333	
10	2019-08-27	-	[]	833,333,333	
11	2019-09-27	-	-	833,333,333	
12	2019-10-27	-	-	833,333,333	
13	2019-11-27	5,000,000,000	-	833,333,335	사모사채 만기일
합 계		5,000,000,000		5,000,000,000	

라. C은 2019. 5. 24. D은행 및 피고와, 이 사건 신탁특약에 대한 제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회수일정의 변경을 위한 것으로서 기 변제된 원금 86,270,344원을 공제한 잔여 원금 4,913,729,656원을 2019. 7. 1.부터 2019. 11. 27.까지 매월 818,954,942원을 변제하여 완제하는 일정으로 조정(이하 '제1차 변제일정 조정'이라 한다)되었다.

마. 원고는 2019. 4. 18. C과 사이에 마스크시트(마스크팩1) 제조에 필요한 부자재이다)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4. 18.과 2019. 4. 22. 각각 마스크시트 450만 장을 C에게 발주하였고, 원고는 2019. 4. 18.부터 4. 25.까지에 걸쳐 마스크시트 대금 302,400,000원을 C에게 입금하였으며, C은 2019. 4. 19.부터 2019. 4. 27.까지에 걸쳐

마스크시트 900만 장을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원고는 C으로부터 납품받은 위 마스크시트를 사용하여 마스크팩을 제조하여 중국업체에 수출하였는데, 수출된 위 마스크팩 중 상당수에서 마스크시트의 눈, 코, 입 부위가 지나치게 늘어져서 그 사용이 불가능 정도의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보고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9. 5. 29. C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

손해배상 지급 청구 및 법적절차 진행 예정 등 통지서

3. 그런데, 귀사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귀사가 납품한 마스크시트상의 부직포 중량이 평균치보다 훨씬 더 낮게 제작되어, 발신인 회사가 중국에 수출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많은 문제 제기로 인하여 귀사가 납품한 마스크시트를 사용하여 제조 내지 수출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과 귀사로부터 공급받은 마스크시트를 사용치 못함으로 인한 금 316,8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5. 그래서, 발신인 회사는 귀사에게 위 금 316,800,000원을 귀사가 2019. 6. 5.까지 발신인 회사에 배상할 것을 통지합니다. 만약, 귀사가 위 시일 내에 금 316,800,000원 상당의 발신인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치 않을 경우, 발신인 회사는 귀사를 상대로 부득이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바. C은 2019. 7. 17. D은행 및 피고와, 이 사건 신탁특약에 대한 제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2019. 7. 1.부터 지급하기로 한 1차 원금 변제금이 일부 미지급되어 이 사건 신탁특약 제1조 제34항에서 정하는 조기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C이 2019. 7. 17.까지 원금 782,914,593원을 변제하고 이자를 계속 지급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잔존 원금의 지급일정을 다음과 같이 조정(이하 ‘제2차 변제일정 조정’이라 한다)하기 위함이었다.

회차	지급일	계산기간별 제1종 수익권 권면액 지급액	계산기간별 적립금액	비고
0	2018-11-27	-	-	사모사채 발행일
1	2018-12-27	-	-	
2	2019-01-27	-	-	
3	2019-02-27	-	-	
4	2019-03-27	-	-	
5	2019-04-27	-	-	
6	2019-06-01	-	-	
7	2019-07-01	-	-	
8	2019-08-01	-	400,000,000	
9	2019-09-01	-	400,000,000	
10	2019-10-01	-	400,000,000	
11	2019-11-01	-	400,000,000	
12	2019-11-27	5,000,000,000	2,617,085,407	사모사채 만기일
합 계		5,000,000,000	4,217,085,407	

사. 이 사건 신탁계약상 C에 대한 사실상의 대출채권자인 피고는 위와 같이 제2차 변제일정 조정을 하면서 C의 매출채권 외에 추가적인 담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9. 7. 10. C으로부터, C이 그 당시 소유하고 있던 모든 부동산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공동담보목록 제2019-976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9. 7.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45355호로, 채권최고액을 45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 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아. 원고는 2019. 8. 16.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7496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C은 원고에게 하자가 있는 마스크시트를 제공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하였고, 위 마스크시트의 결함으로 인해 원고는 마스크팩을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C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하므로, C은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302,4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마스크팩을 제조하면서 추가로 598,500,000원(= 원고와 마스크팩 생산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지급한 금액 414,000,000원 + 마스크팩 파우치 구매대금 184,500,000원)을 지출하였으나 C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마스크팩을 판매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C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처럼 C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 중 일부인 4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자. 관련 소송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2. 1. 25. C이 원고에게 공급한 마스크시트에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갖추어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존재하여, C이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면서 C이 원고에게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은 601,650,000원(= 원상회복 302,400,000원 + 손해배상 299,250,000원2))이므로, C은 위 금원 중 원고가 명시적 일부 청구로 구하고 있는 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6.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14.부터 F, 신용보증기금, G 등이 신청한 다수의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인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2021. 9. 27. 공매절차에서 총 1,653,770,000원에 낙찰된바, 같은 날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H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각 부동산에 경료되었던 이 사건 근저당 등기는 말소되었다. 위 낙찰대금은 선순위 국세 등에 전부 충당되어 피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호증, 을 제1, 4,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제출한 2021. 11. 30.자 준비서면에서 'C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여 파산 위기에 있다는 소문이 있어 손해배상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 근거가 확실한 손해에 대하여만 우선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명시적 일부청구로 ... 청구금액을 정리합니다'라고 언급한바, 이는 원고가 C의 자산에 대하여 조회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하여, 원고가 최소한 위 시점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사실 및 C의 채무초과 사실 등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채권자인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2)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그 밖에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1년 전 이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관련 소송의 2021. 11. 30.자 준비서면이 작성된 시기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위 2021. 11. 30.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2022. 4. 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또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9. 7. 10.로부터 5년 내에 제기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다8286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고,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수하여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104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C으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마스크시트와 관련하여 마스크시트의 눈, 코, 입 부위가 지나치게 늘어져서 그 사용이 불가능한 정도의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 원고가 2019. 5. 29. C에게 마스크시트의 부직포 중량이 평균치보다 낮아 사용할 수 없는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사실, 관련 소송에서 이루어진 감정에서도 C이 납품한 마스크시트의 평량3)이 평균에 미달하고 조직이 성글어 변형이 쉽게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와 앞서 본 원고의 C에 대한 내용증명상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와 같이 C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무렵부터는 C으로부터 납품받은 마스크시트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9. 7. 10. 이전에 이미 원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 그 액수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나아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현실적으로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원고와 C 사이의 마스크시트 공급계약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인 2019. 4. 18.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위 계약에 기한 납품이 2019. 4. 27.까지 있는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객으로부터 마스크시트의 문제점을

통보받은 원고가 2019. 5. 29. C에게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후 원고가 C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그 승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결국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성립한 이상, 원고의 C에 대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성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분쟁의 정도로서 단순한 채권발생의 가능성에 불과한 것이어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원고에게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존재한 이상 그것이 소송에서의 감정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입증되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채권 자체는 적어도 앞서 본 원고의 C에 대한 내용증명 송달 시점에는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당시 채권이 성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내용증명에서 주장했던 하자가 그 후의 소송절차에서 있는 감정에서도 그대로 인정되었고, 심지어는 위 감정결과에 따르면 감정대상 마스크시트 수량 중 상당수가 불량 미달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채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2) 사해행위에 대한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고, 그 자산가액은 약 73억 원 정도인 반면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I, J은행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채권최고액 합계가 약 71억 원 정도이고 중소기업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해 2020. 3. 12. 임의경매신청한 경매사건의 청구금액이 33억 원이 넘는 점,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해 실시된 앞서 본 공매절차에서 J은행의 채권 양수인에게 배분된 금액이 15억 원이 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도 채권최고액에 근접한 금액으로 보이며, 여기에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채권액이 40억 원이 넘는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수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조치를 취한 점, C에 대한 2019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C의 경영진이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시하지 않아 감사인이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어 의견거절을 밝힌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C이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사해의사

1)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의 재산상태, 채무현황,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시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심화되어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C이 2019. 7. 1. 지급하기로 한 원금 1차 변제금이

일부 미지급되는 등 채권 회수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유로 조기지급사유에 의한 모든 채권의 즉시지급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C이 영위하던 사업은 즉시 중단되고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당시 C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이었으므로 일정변경을 통하여 대출약정을 유지하고 C의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변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하여 2차 변제일정 조정 무렵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은 기존 대출채무자에 대하여 대출일정 조정을 통한 대출약정을 유지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채무변제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설정된 것이어서 사업의 계속을 통한 회사의 갱생이라는 목적을 위한 담보제공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9461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 있어서 채권회수를 위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내지 가압류 등의 집행보전조치로 발생하는 사업추진상의 어려움은 그러한 조치를 행하는 채권자의 채권액이나 변제기의 도래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이다. 또한 특정 채권자가 당시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권회수조치에 적극성을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들 사이에서 우선적 담보제공의 필요성에 관한 차별적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채무자가 사업활동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신규자금의 유입과 기존채무의 이행기의 연장 내지 채권회수조치의 유예는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적 추진을 위하여 가지는 경제적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9215 판결,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그 의도가 사업 계속 추진을 위하여 피고에 대한 채무의 지급일정을 연기 내지 조정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한편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는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 스스로도 C이 2019. 7. 예정된 1차 원금 변제금을 일부 미지급하자 추가적인 담보를 요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을 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고,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애초에는 C의 매출채권신탁을 통해 2019. 7월부터 2019. 11.월까지 매월 8억 원 상당씩을 균등하게 변제하여 신탁만기에 50억 원의 채무를 모두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이루어진 2차 변제일정 조정에서는 2019. 8월부터 2019. 11월까지 매월 4억 원씩을 변제하고, 신탁만기인 2019. 11월 말에 26억 여원을 한꺼번에 변제하여 채무상환을 하는 것으로 되어 종전 변제계획에 비해 매우 상이한 형태로 변제계획이 변경되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도 위 근저당권설정 무렵에 C의 사업현황이나 채무 상환능력이 좋지 않음을 인식하여 매출채권신탁과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부동산 담보설정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4).

2)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위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해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원고는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공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낙찰되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피고의 근저당 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5)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배당금을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피고가 배분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가액배상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형

[별지1]

목록

(2019. 7.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45355호 근저당권설정등기
공동담보목록 제2019-976호)

1. [건물] 경기도 광주시		외 1필지	호동
2. [건물] 경기도 광주시		외 2필지	호동
3. [건물] 경기도 광주시		외 2필지	호동
4. [토지] 경기도 광주시			
5. [토지] 경기도 광주시			
6. [토지] 경기도 광주시			
7. [토지] 경기도 광주시			
8. [토지] 경기도 광주시			
9. [토지] 경기도 광주시			
10. [건물] 경기도 광주시			호동
11. [건물] 경기도 광주시			호동
12. [토지] 경기도 광주시			
13. [토지] 경기도 광주시		주식회사	지분
14. [토지] 경기도 광주시		주식회사	지분
15. [토지] 경기도 광주시		주식회사	지분
16. [건물] 경기도 광주시			
17. [토지] 경기도 광주시			
18. [토지] 경기도 광주시		주식회사	지분
19. [토지] 경기도 광주시		주식회사	지분
20. [토지] 경기도 광주시		주식회사	지분, 끝.

[별지2]

1. [건물] 경기도 광주시 2. [건물] 경기도 광주시 3. [건물] 경기도 광주시 4. [토지] 경기도 광주시 5. [토지] 경기도 광주시 6. [토지] 경기도 광주시 7. [토지] 경기도 광주시 8. [토지] 경기도 광주시 9. [토지] 경기도 광주시 10. [토지] 경기도 광주시 11. [토지] 경기도 광주시 12. [토지] 경기도 광주시 13. [건물] 경기도 광주시 14. [토지] 경기도 광주시 15. [토지] 경기도 광주시 16. [토지] 경기도 광주시 17. [토지] 경기도 광주시

외 1필지 호동

외 2필지 호동

외 2필지 호동

주식회사 지분

주식회사 지분

주식회사 지분

주식회사 지분

주식회사 지분

주식회사 지분, 끝.

[별지3]

목록		
1. [건물] 경기도 광주시		호동
2. [건물] 경기도 광주시		호동
3. [토지] 경기도 광주시		끝.

1) 부직포 재질의 얼굴 모양 시트를 넣은 파우치에 영양성분 및 보습성분이 함유된 마스크액을 주입한 후 밀봉포장한 제품이다.

2) 위 법원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C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299,250,000원(= 598,500,000원×50%)을 인정하였다.

3) 마스크시트의 1㎡ 면적의 중량을 의미한다. 평량(g/㎡)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마스크시트가 더 촘촘해지게 된다.

4)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원상회복청구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기는 하나,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원상회복청구의 소는 서로 소송물과 쟁점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로서 양자가 반드시 동시에 제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별개로 제기될 수 있고, 전자의 소에서는 승소하더라도 후자의 소에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방어 방법 여하에 따라 패소할 수도 있으며, 취소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은 민법 제407조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치고 이로써 그 소의 목적은 달성되므로(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5)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낙찰됨으로써 피고의 근저당 등기가 말소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